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21.06.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이하 “실업팀”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실업팀 운영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실업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 2 장 설치 및 해체 등

제3조(설치) 실업팀 운영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각 종목별 팀, 인원구성 등 실업팀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회장 승인을 득하여 설치·운영한다.

1. 검도
2. 근대5종
3. 당구
4. 레슬링
5. 배구
6. 복싱
7. 사격
8. 스쿼시

9. 스키
10. 소프트테니스
11. 씨름
12. 에어로빅
13. 역도
14. 철인3종
15. 체조
16. 카누
17. 핀수영

제4조(해체 및 변경) 운영종목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인원 가감, 지원인력 및 운영 종목 변경, 해체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제 3 장 구성 및 직무

제5조(구성 및 직무 등) ① 실업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장, 관리단장, 부단장, 총감독, 주무 각 1명과 종목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이하 “선수단”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본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실업팀 관리를 위해 관리단장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체육진흥본부장, 총감독은 실업팀 업무 담당부장, 주무는 실업팀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관리단장 및 감독, 코치, 트레이너(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채용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선수단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 선수단을 대표하며 실업팀 운영을 총괄한다.

2. 관리단장 : 실업팀 운영에 따른 훈련점검 및 체계적인 선수단 관리와 경기

력향상을 위하여 제반사항(훈련일지 관리, 경기력분석, 월별 훈련상황보고 등)을 확인·점검한다.

3.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실업팀 운영 전반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단장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
 4. 총감독 : 실업팀 운영전반의 업무를 주관한다.
 5. 주무 : 실업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의 제반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며, 종목별 팀을 관리·운영한다.
 6. 감독, 코치 : 단장의 명을 받아 종목별 담당 선수단 관리(선수확보, 우수선수육성, 선수 훈련지도, 대회출전, 체력관리, 팀 내 인권침해 예방 등) 및 원활한 팀 운영을 위해 본회에서 요구 행정 서류를 기일 내 제출(연간운영계획, 월간훈련계획, 일일훈련일지, 선수 상담일지, 대회참가계획·결과보고, 팀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한다.
 7. 트레이너 :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8. 선수 : 본회 소속으로 자긍심을 갖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임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등 경기력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⑤ 실업팀 운영 및 선수단 구성에 대한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회장 승인을 득하여 운영한다.

제6조(신고의 의무) ① 선수단은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승부조작, (성)폭력) 및 금품·향응수수 등 각종 비위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회 실업팀 관리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실업팀 관리부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인권침해 사안 등 선수단 운영과 관계되는 사안일 경우 우선조치(훈련진행 및 선수단 분리 등) 하고 1차 사실관계 확인 후 단장 결재를 득하여 민원처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팀내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매월 1회 이상) 적으로 선수들과 상담하고 상담 내용을 일지에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주에 실업팀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 4 장 자격 및 임명

제7조(임용 및 자격) ① 실업팀 관리단장 및 지도자 임용은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회장이 임용한다.

1.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장 및 지도자를 신규채용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 별도의 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가. 채용위원회는 채용실시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채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나. 위원 구성시 경기력향상위원회 2명(위원장 포함)과 외부위원 1/2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 외부위원은 각종 유관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2. 선수 임용 및 선수단의 재임용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장이 임용한다.

②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 격 요 건
관리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한 사람 · 전문체육 지도자 경력 25년 이상인 사람 · 만 60세 미만인 사람
감독, 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종목 지도자 또는 선수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만 60세 미만인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트레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이너 관련 자격, 스포츠지도사(전문 또는 생활) 자격, 스포츠마사지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만 60세 미만인 사람
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으로 선수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 만 40세 미만인 사람(단, 당해 연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로 둘 수 있다.)

제8조(관리단장·지도자·선수 평가) ①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는 매년 경기력향상 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관리단장 및 지도자의 평가결과는 재계약 여부 및 연봉획정에 반영되며, 연봉 조정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③ 선수의 평가결과는 재계약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을 협상·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용기간) ① 관리단장 및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기력향상 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2년간 받은 평가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일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로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경기력 및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2년 까지 할 수 있다. 단, 정년이 초과하는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제한한다.

③ 임용기간 내 평가결과 및 각종 대회 입상성적, 평소 훈련 태도 등을 감안 하여 재임용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회장이 해임 할 수 있다.

제10조(정년) ①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단장 및 지도자 : 만 60세

2. 선수 : 만 40세(단, 당해 연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연도 중에 있으면 당해 연도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구비서류) ①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를 임용 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1부
4. 이력서 1부
5. 범죄사실확인서 1부
6. 징계사실유무 확인서(지도자 : 스포츠윤리센터, 선수 : 중앙종목단체 발행) 1부

※ 지도자의 경우 최종합격 이후 절차에 따라 발급

7.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8.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지도자 해당) 1부
※ 트레이너의 경우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가능
9. 경력증명서(경기실적, 지도실적, 국가대표확인서, 국가대표 지도확인서 등 / 지도자 해당) 1부

10. 경기실적증명서 및 이적동의서(선수 해당) 1부

11.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

12. 통장사본 1부

13. 기타 단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단, 제11호, 제12호의 서류는 임용 후 구비하게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경력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취소 또는 해임 시킬 수 있다.

제12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단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승부조작, (성)폭력) 및 금품·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본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타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3. 각종 체육관련 단체로(종목단체, 체육회 등)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4.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제13조(면직 및 해임) ①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면직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실업팀 선수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평가에 따라 경기 성적이 저조하며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경우
4. 사고 및 부상 등으로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업팀 관리 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장소를 3회 이상 무단 이탈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7. 기타 행정상, 재정상 사유로 해임이 불가피하였을 경우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9.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승부조작, (성)폭력) 및 금품·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본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타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10. 각종 체육관련 단체로(종목단체, 체육회 등)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11. 실업팀 운영 예산 사정으로 해체 또는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12. 복무상 관리·운영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13.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지도자가 팀 업무와 관련되어 기소되거나 민원 등의 사유로 업무가 곤란할 경우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다.

제 5 장 복 무

제14조(복무 및 겸직금지) ①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는 계약 기간 동안 직무 및 훈련 등에 전념하여야 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겸직할 수 있다.

1. 국가대표팀 지도자(전임 제외)
2. 중앙종목단체 임원(실무임원 제외)
3. 부산시 종목단체 임원(실무임원 제외)
4. 실업연맹 및 기타 체육유관기관 임원(실무임원 제외)
5.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복무사항은 본회 사무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5조(복무시간) ①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의 복무시간은 본회 사무처 운영규정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제16조(휴무) 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훈련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의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본회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전지훈련 및 대회직후 단장의 재량으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2항에 의거 휴무일 및 근로시간 외의 훈련실시 시 팀별 훈련계획에 의거 대체휴가 및 보상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선수단은 휴가 실시 시 실업팀 관리 부서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훈련 및 대회참가

제17조(훈련) ① 실업팀 훈련은 연중 계속 실시한다.

② 특별히 개인 훈련이 필요한 경우 관리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감독, 코치는 팀 훈련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에 실업팀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월간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월 마지막주에 제출하며, 매일 훈련상황을 일지에 기록하여 월간 훈련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18조(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① 감독, 코치는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시 2주전 참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업팀 관리 부서로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참가하여야 한다.

1. 지도자 및 선수가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등 선수단 운영을 목적으로 출장을 시행할 경우 [별표5] 출장여비 기준에 의거 실업팀 운영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 및 대회별 지정된 대회 참가비 등을 지급한다. 단, 장기간(1개월 이상) 전지훈련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에 따라 일정기간만 지원할 수 있다.

2. 해외전지 훈련 및 대회참가시에는 공무원 해외여비 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사정에 따라 일정기간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감독, 코치는 대회 및 전지훈련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주무에게 제출해야한다.

제19조(그 외 지원) ① 선수단의 일상 훈련 및 경기적응 훈련 등을 위해 유료 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선수단의 훈련 및 대회참가에 필요한 장비는 종목별 특성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지원 가능하며, 피복을 제외한 훈련장비는 장비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지도자 책임하에 관리토록하고 매월 마지막주에 재고 현황을 실업팀 관리부서로 제출한다.

제 7 장 보수 및 지원

제20조(보수의 구분) ①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의 보수는 연봉제로 [별표1] 기준에 따라 책정된 기본급과 [별표3]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

② 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일시지원금, 목표성과금 등 특별한 경우는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연봉액 결정)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의 연봉은 [별표1] 기준에 준하여 협상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제22조(퇴직금) ① 실업팀에서 1년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퇴직금은 본회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의 개인별 퇴직급여 계좌에 적립하고 퇴직시 지급한다.

④ 퇴직자는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이어야 한다.

제23조(일시지원금 및 목표성과금) ① 실업팀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별표2]와 같이 일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중 계약서상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사항에 따른다.

② 계약서에 명시된 목표성적을 달성시 예산범위내에서 약정된 목표성과금을 지급한다.

③ 일시지원금 및 목표성과금은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제24조(합숙소운영) ① 선수의 기량향상과 훈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숙

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합숙소 지원대상은 선수이며, 종목별 훈련장 인근 원룸 혹은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선수인권 침해예방을 위해 본회가 운영하는 합숙소 입·퇴소는 자기결정권에 따르며 합숙소 지킴 이행 동의 후 사용 가능하다.

④ 단장은 합숙소를 사용하는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실업팀 주무를 숙소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⑤ 지도자는 합숙소를 사용하는 선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급적 숙소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단, 숙소 관리의 목적으로 사전 예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기타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본회 합숙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5조(차량 및 유류비 등 지원) 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차량임차 및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차량의 구입 및 임차시 명의를 회장으로 하며, 차량 유류비는 훈련, 대회참가 시 이동에 필요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유류비, 통행료 등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각종 보험가입) ① 선수단의 질병, 부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에 따라 4대 사회보장(건강, 국민, 산재, 고용) 보험 등에 가입한다.

제27조(선수단 광고행위에 대한 사항) ①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동의없이 선수활동 외 광고 선전, 방송출연 등 일체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부산광역시 및 본회는 선수활동 및 비선수활동과 관련한 선수 및 지도자는 초상, 영상, 성명 등을 방송, 보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선수 및 지도자는 부산광역시 및 본회의 광고, 홍보, 프로모션 활동 및 소재 제작(사진촬영, 비디오촬영, 인터뷰녹음 등)에 필요할 경우 참가해야 한다.

④ 선수 및 지도자는 다음의 각 호에 관하여 단장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야 한다.

1. TV/라디오 프로그램, 이벤트의 출연
2. 선수의 초상, 영상, 방송, 보도, 광고 등의 사용 및 허락(인터넷 포함)
3. 부산광역시, 본회, 위탁기관 이외의 제3자의 광고 등에 관여

부 칙(202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별표1]의 기준은 2021년 임용되는 신규 지도자, 신규 선수부터 적용된다.

② 제9조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임용자에 한하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은 자동 종료한다.(제9조제1항은 2022년 임용자부터 적용)

[별표 1]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 연봉 책정을 위한 등급별 기본급 (제20조, 제21조 관련)

1. 관리단장 및 지도자 채용 시 등급별 기본급 책정관련

(단위 : 천원)

구분	등급	최 초 기본급책정	자격증	지 급 기 준
관 리 단 장	1	4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국가대표팀(선수 및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 단일팀 지도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2	3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단일팀 지도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감 독 · 코 치	1	3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국가대표팀(선수 및 지도자) 경력이 있는 지도자 ·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실적 있는 지도자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1,500점이상 실적을 보유한 지도자 · 전략,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의 지도자
	2	30,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 ·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종목의 경우 4강 이상, 개인종목의 경우 금메달 획득실적이 있는 지도자 · 해당경기종목 선수출신으로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실적 있는 지도자
	3	2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 · 해당경기종목 선수출신으로서 충분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도자
트 레 이 너	1	3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건강운동 관리사 및 스포츠 지도사 (전문, 생활)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트레이너 경력 또는 의료계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33,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스포츠 지도사 (전문, 생활)	· 트레이너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트레이너 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
<p>(비고)</p> <p>1. 해당 기준은 신규 입단시 지급기준에 따른 연봉을 책정하기 위한 기본급 책정기준이다.</p> <p>2. 각종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표3과 같이 지원한다.</p>				

2. 선수 임용시 등급별 기본급 책정

(단위 : 천원)

등 급	기본급	지 급 기 준	비 고
특급	80,0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가대표 선수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성적을 획득한 선수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AG대회)에 참가하여 은메달 이상 획득한 선수 · 최근 2년 이내 전국 규모대회에서 3회 이상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1	80,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 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AG대회)에 참가하여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2	60,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2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금메달 1개 이상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3	40,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100점 이상 획득 실적이 있는 선수 ·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동메달 2개 이상 	
4	30,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5위권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 	

※ 등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목 등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 등급을 상·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관리단장, 지도자 기본급 조정 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

적용대상	등급	평가점수	기본급 인상률
관리단장 지도자	1등급	95점이상	5%
	2등급	90점이상~95점미만	3%
	3등급	85점이상~90점미만	2%
	4등급	80점이상~85점미만	동결
	5등급	75점이상~80점미만	-2%
	6등급	70점이상~75점미만	-3%
	7등급	70점미만	-5%

[별표 3]

각종 수당 세부내역 (제20조 관련)

구 분	지급 기준	지급대상
훈련수당	- 연간 12회(1월~12월) 지급 / 매월 50만원 ▶ 월별 포함내역 : 식비30만원, 교통비10만원, 목욕비10만원	감독, 코치 선 수
명절수당	- 연간 2회(설, 추석) 지급 / 월 기본급의 60% 지급	관리단장 감독, 코치 트레이너
정근수당	- 연간 2회(1월, 7월)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월 기본급의 최대 50% 내 지급) ▶ 계약기간에 따른 적용 요율 및 기본급에 따라 개인별 지급금액 상이	
직책수당	- 연간 12회(1월~12월) 지급 / 매월 20만원	
관내출장여비	- 훈련점검 등 관내출장 실시에 따라 본회 사무처운영 규정 제33조에 따라 지급 ※ 예산범위 내 지급 할 수 있다.	관리단장

[별표 4]

일시지원금(계약금) 지원 기준 (제23조 관련)

등 급	등 급 분 류 기 준	지 급 액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현) ·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1위 이상의 실적 · 올림픽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5,000만원 이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이내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대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2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람 · 전년도 전국 규모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실적이 3회 이상인 사람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4,000만원 이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이내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동메달 획득 실적 이상 · 전년도 전국 규모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3,000만원 이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전국체전 득점을 획득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전년도 전국 규모대회에서 1회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 경기력향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000만원 이하

※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가장 최근 전국체육대회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 개인별 책정된 기본급 중 일부를 일시지원금으로 요청할 경우 최저임금 연봉을 고려하여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5]

대회 및 전지훈련 등 국내여비 지급 기준 (제18조 관련)

지원항목	산출기초	지급액	1일 지급액
숙박비	35,000원×1일= 35,000원	35,000원	80,000원
식비	25,000원×1일= 25,000원	25,000원	
일비	20,000원×1일= 20,000원 ※ 실업팀 보유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일비는 1일 10,000원 지급	20,000원	
교통비	대중교통(버스, 기차)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지도자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체육회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지도자 서명)

⑦ 체육회와 지도자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체육회와 선수단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지도자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지도자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체육회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체육회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지도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체육회는 지도자가 해당 팀 관리·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체육회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도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

될 경우 지도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지도자가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지도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지도자는 체육회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지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자신이나 해당팀에 대한 체육회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체육회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체육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지도자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를 지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지도자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체육회와 협의되지 않은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해당팀 소속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해당팀 소속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 ⑥ 지도자는 계약기간 중 체육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체육회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지도자는 체육회가 지도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규정 제6장 등에 따라 연봉은 총 (한글)

원(₩000,000,000)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000,000,000), 훈련수당(한글) 원(₩000,000,000원), 직책수당(한글) 원(₩000,000,000) 으로 구성된 일급(한글) 원(₩000,000,000)으로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2. 정근수당(한글) 원(₩000,000,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연 2회(1월, 7월) 해당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명절수당(한글) 원(₩000,000,000원)은 월 기본급의 60%로 연2회(설, 추석) 해당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체육회는 본 계약기간 동안 지도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체육회와 지도자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영리활동) 지도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체육회가 수익을 얻는 경우, 체육회와 지도자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체육회는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자의 지도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지도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체육회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와 지도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지도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① 체육회는 계약기간 중 지도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지도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체육회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지도자의 지도활동 또는 체육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체육회와 지도자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지도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회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지도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지도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체육회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지도자의 명예나 기타 지도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체육회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단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와 지도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체육회와 지도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체육회와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지도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체육회의 정당한 지시에도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체육회(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자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체육회 또는 지도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또는 지도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7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지도자가 지도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지도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체육회와 지도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9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지도자와 체육회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

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0조(부속 합의) ① 체육회와 지도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체육회와 지도자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부산광역시체육회(사용자)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77 부산광역시체육회관
회사명	부산광역시체육회
대표자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인)

지도자(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 첨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선수 0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3. 체육회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체육회와 약정한 실업팀 운영의 부대활동(단, 실업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및 부산관내 종목 훈련이
가능한 장소로 하며, 훈련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체육회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근무일 0시부터 00시까지 1일 6시간 40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회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체육회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단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체육회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체육회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체육회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체육회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체육회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체육회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체육회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체육회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선수가 체육회(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체육회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체육회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체육회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체육회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체육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체육회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체육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체육회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선수는 체육회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규정 제6장 등에 따라 연봉은 총 (한글)

원(₩000,000,000원)이며, 계약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000,000,000)과 훈련수당(한글) 원(₩000,000,000원) 으로 구성된 일급(한글) 원(₩000,000,000)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체육회가 매월25일, (한글) 원(₩000,000,000)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체육회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체육회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팀이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체육회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 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체육회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체육회가 수익을 얻는 경우, 체육회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체육회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체육회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체육회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체육회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체육회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체육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체육회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회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체육회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체육회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체육회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체육회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체육회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체육회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체육회(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체육회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체육회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체육회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체육회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체육회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체육회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부산광역시체육회(사용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선수(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 첨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서식 2]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월) 운 영 계 획 서

결 재	관리단장

팀 명		훈련인원	
훈련기간		휴 일	
훈련목표			
중점사항	- - - - -		

전지훈련 계 획 (있음/없음)	기 간		장 소	
	목 적			

대회참가 계 획 (있음/없음)	대 회 명			
	참가 세부종목			
	기 간		장 소	

특이사항	- - -			
------	-------------	--	--	--

작 성 일		작 성 자	직 위 :	성 명:	(인)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서식 3]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결 재	관리단장

팀 명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명단)			

훈련결과	- - - - -
------	-----------------------

분석 및 문제점	- - - - -
----------	-----------------------

향후대책	- - - - -
------	-----------------------

훈련비정산	지출액	숙박비	운임	기타

작성일		작성자	직위 :	성명:	(인)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서식 4]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결 재	관리단장

대회개요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입상실적	입상 인원	성명	내용	메달 획득	구분	금	은	동
					단체			
					개인			

세부결과

구분	성 명	결 과	당초예상전력	비 고

경기력 분석 및 향후대책

—

—

—

—

—

작성일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